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家庭暴力의 現況과 問題點 및 防止方案
研究

2011年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letter 'H' in a light blue color. To the right of the 'H',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gray, sans-serif font, stacked in two lines.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泳 萬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家庭暴力의 現況과 問題點 및 防止方案
研究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preventive measures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泳 萬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家庭暴力의 現況과 問題點 및 防止方案 研究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preventive measures

위 論文을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泳 萬

金泳萬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가정폭력의 이론 및 현황	5
제 1 절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5
1. 가정폭력의 정의	5
2. 가정폭력의 유형	6
제 2 절 가정폭력의 특성	9
1. 일반적 특성	9
2. 폭력배우자의 특성	10
제 3 절 배우자폭력의 발생원인 및 특징	12
1. 배우자폭력의 발생원인	12
2. 배우자폭력의 특징	13
제 4 절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14
1. 개인심리적 접근	15
2. 사회심리적 관점	17
3. 체제이론	19
4. 페미니즘 이론	19
제 5 절 가정폭력의 현황	21
제 3 장 가정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2
제 1 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절차	32

1. 법적 근거 및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32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	33
제 2 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현황 및 실태	38
1. 총설	38
2. 가정폭력상담소	39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1
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43
제 4 장 가정폭력 발생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46
제 1 절 가정폭력 발생의 문제점	46
1. 개인적 문제	46
2. 사회적 문제	47
3. 제도적 문제	49
제 2 절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52
1. 예방적 대책	52
2. 개인적 대책	54
3. 사회복지적 대책	56
4. 제도적 절차 및 입법적 개선방안	58
제 5 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7

【 표 목 차 】

[표 2-1]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내용 현황	22
[표 2-2]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23
[표 2-3] 가정폭력범죄 검거 · 조치 현황	24
[표 2-4]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행위	25
[표 2-5]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	26
[표 2-6] 남편의 성장과정별 아내폭력 발생률	27
[표 2-7] 남편의 사회적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아내폭력 발생률	28
[표 2-8] 남편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아내폭력 발생률	29
[표 2-9] 남편의 음주정도별 아내폭력 발생률	29
[표 2-10] 부부의 교육수준별 아내폭력 발생률	30
[표 2-11] 부부의 취업여부별 아내폭력 발생률	31
[표 2-12] 폭력을 행사한 후의 남편의 태도	31
[표 3-1] 우리나라 가정폭력상담소의 현황	40
[표 3-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조치결과	40
[표 3-3] 가정폭력상담소의 가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41
[표 3-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41
[표 3-5] 여성을 기준으로 한 보호시설 입소자의 연령대별 분포	42
[표 3-6] 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지원실적	43
[표 3-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시설 현황	44
[표 3-8] 1366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유형	44
[표 3-9] 1366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조치 결과	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가정은 가족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가족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안식처이자 보금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인생의 동반자로서 상호간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의 당사자로서 대립하여 단순한 폭력에 그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 등 엄청난 사태로까지 진전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남편의 습관화된 가정내 권위의식이 가정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만 인식하고 사회적, 법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여성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건의 운동을 활발히 하여 가정폭력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률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환경의 조정과 심성개선을 위한 보호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들은 가정폭력을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인식하여 선포된 것이며, 주요대책으로서 보호처분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어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행태를 살펴보면 입법과정만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간단히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의 퇴조와 더불어 ‘매맞고 사는 남편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의 확산으로 외국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학대, 유기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가정폭력 문제가 형사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현황¹⁾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건수 307,851건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130,921건으로 42.5%를 차지하여 가정문제중 가정폭력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상담건수는 실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2008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수²⁾는 11,461건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가정폭력을 집안의 문제이며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여 가정내에서 은폐함으로써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제까지 가정폭력은 가정내부의 문제로 취급되며 특히 배우자폭력의 문제는 남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부만의 영역으로 여기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정폭력 문제를 가족내부의 문제이자 사회문제로 함께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제까지는 가정폭력의 주형태는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남편이 그렇지 못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고도의 산업화 과정과 특히 IMF를 거치면서 각종 경제적 부담과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가 급락한 반면 취업전선에 뛰어 들어 보다 힘을 얻게 된 아내들은 기존의 불평등한

1)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발간 자료 인용

2) 2009 경찰백서 자료 인용

가정내의 지위와 부당한 대우를 자각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 지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맞는 남편’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폭력의 양상이 과거와는 틀린 형태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여전히 신체적으로 물리적 힘이 강한 남편에 의해 아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 배우자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배우자폭력 중에서도 힘에서 강자인 남편이 힘의 약자인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 가정폭력의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폭력중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특징 및 다양한 발생요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복지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토록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 접근 방법 위주로 사용하였다. 가정폭력 사범은 은폐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범죄로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자신의 가정사를 자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추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여건상 제외되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되어진 각종 통계자료는 최근의 연구자료와 공식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대한 정확도를 기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설문조사 보다 타당성과 신뢰도에 있어 떨어지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참고서적,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수집

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의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법원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복지학계의 가정복지 분야, 사법과정을 포함한 교정복지 분야의 성과 고찰은 물론 범죄학, 심리학 등 관련된 인근 학문 분야의 국내외 문헌과 연구실적을 살펴보고, 관련자료의 분석적 접근 방법을 준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연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전체 5장으로 구성하여 기술할까 한다

제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그리고 배우자폭력의 발생 원인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정신병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후 통계자료를 통한 가정폭력의 실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절차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현황 및 실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제도적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으며,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을 예방적 대책, 개인적 대책, 사회복지적 대책, 제도적 절차 및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함과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현황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³⁾ 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⁴⁾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 구성원인 경우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⁵⁾ 법적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칭한다) 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형법상의 폭력(행) 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⁶⁾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1)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학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범위도 배우자 외의 기타 친족관계로 까지 확대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연구목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중 가장 많이

3) 가정폭력을 정의하는 단어로 ‘Domestic Violence’, ‘Home Violence’, ‘Family Violence’가 있다. ‘Home Violence’는 집(Home) 밖에서 발생하는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Family Violence’는 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전(前)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Domestic Violence는 장소적인 개념(Home)과 인적 개념(Family)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동명, “가정폭력의 본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1권(2006), 238면

4) 박인환 “가정폭력 범죄의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5면

5) 김현우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4면

6) 하태훈 『판례중심 형법 각론』 2006, 법원사, 356면

발생하는 배우자간 폭력을 중심으로 서술할까 한다. 배우자간 폭력을 정의하는 용어로서는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violence), 배우자 학대(spouse-abus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배우자폭력(spouse-violence) 등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 가정폭력, 아내구타의 용어들이 큰 차이없이 사용되고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간 폭력을 배우자로 부터 반복적, 계획적, 의도적인 폭행을 당해 그 결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경우⁸⁾ 라고 정의하고, 그 용어는 배우자폭력(spouse-violence)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여성의 신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가정폭력과 다른 형태로 배우자폭력이 행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힘의 약자인 여성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중 배우자폭력 위주로 논지를 전개할까 한다

2.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간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폭력,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폭력,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폭력, 형제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형제폭력으로 대별될 수 있다.⁹⁾ 본 단원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배우자폭력을 비롯하여 자녀에 대한 폭력중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폭력중 노인학대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1) 배우자폭력

7) 박미은 『대한의료사회사업가 협회 워크숍 보고서』,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96, 4면

8) 차준구, “아내구타의 현황”,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탐구당, 1997) pp 180-181

9) 박인환, 전계논문, (2009) 8면

배우자폭력은 말 그대로 배우자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베르고위츠(Berkowitz)는 배우자폭력을 신체적, 물리적 상해와 언어적 상해를 포함하여 해악을 끼치는 경우와 특히 의도적으로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로 규정¹⁰⁾하여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도적인 정서적,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에 부부간에 행해지는 성적학대나 도구사용 및 기물파손 및 유기(遺棄)행위를 통하여 상대배우자를 위협하는 행위도 부부폭력의 행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배우자폭력을 정의하여 보면 행위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외에도 성적학대, 위험한 도구사용과 기물파괴 및 부조(扶助)를 요하는 배우자의 유기행위 등을 통해 배우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폭력을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인 폭력 위주로 서술하고자 하는 바, 이는 배우자폭력 가운데에서도 남편의 폭력행사로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격적이거나 보다는 주로 남편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한다¹¹⁾

2)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대부분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여성도 상당한 부분

10) 김재엽,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1998) pp87-114

11) 상계서, (1998) pp 87-114

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소외, 양육에 대한 책임감,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이유가 된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소외된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 미혼모일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할 위험성이 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에 의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주요 인물이 남성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경제의 양극화 등에 의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혼, 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인식이 낮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효과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3)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개념 정의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더 적극적인 방임으로 유기, 금전적인 갈취나 착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건도 증

12) 박성석외 4인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9) 242면

가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 진상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선에서 숨겨져 있는 경향이 있다.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나 여성학대에 비해 대중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여성학대에 그리고 1980년대에는 아동성학대가 사회적 관심을 차지한 반면 노인학대는 노년기가 생활주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인식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사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간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방임과 유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대책은 입증된 방법이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가정폭력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은폐성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른 폭력에 비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의 은폐성은 가정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가족 외 다른 타인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폭력문제들이 장기화되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연속성

가정폭력은 가장 경미한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선상에 배열되면서 확대되어 간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의 연속성은 각각의 폭력행위가 초기에는 가벼운 구타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변화하게 된다

3) 상습성

폭력이 반복될수록 부부간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폭력의 주기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다. 가정폭력의 상습성은 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세대전수성

가정폭력은 학습성이 강하다. 때로는 가족구성원간에 폭력의 정당성, 피해자의 무력감이나 죄의식 등이 합리화되어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믿어 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에 길들여지는 경향을 보이며, 일단 한 번 폭력이 행사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폭력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폭력 행사에 무감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데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2. 폭력배우자의 특징

1) 문제의 축소화, 문제 자체의 부인

첫째 폭력남편들은 자신들의 폭력적 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 죄

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폭력을 인정하면 법적인 책임이 커진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폭력사실을 축소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폭력 남편들은 자신의 폭력행동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흔히 폭력 남편들은 폭력사실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아내나 술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2) 의존성과 질투

폭력남편들의 상당수는 사랑과 지지, 친밀감, 문제해결의 대상 등에서 아내가 유일한 원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존성은 일정 부분 정서적 고립과 이에 의한 소외감의 결과로부터 생성된다. 질투도 폐쇄된 체계의 결과로서 생겨나게 된다. 상당수의 폭력남편들은 외부 사람들을 대부분 침입자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간의 유대를 더 긴밀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상호적이지 못할 때 폭력남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며 폭력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된다.

3) 낮은 자존감

폭력남편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신감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기술이 낮고 사회화과정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적다. 특히 폭력 남편들은 배우자가 NO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길 뿐 아니라 이를 인간적 관계의 분리로 받아들여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4) 아동기 학대 경험

많은 폭력 남편들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거나 부모의 배우자 학대를 목격함으로써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성장후에는 전통적인 성역

할 습득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폭력남편들은 아내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융통성없는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배, 통제하며 아내에게 가사일과 양육을 책임지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고 추종하기를 원한다. 폭력남편들은 아내에게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조금이라도 기준치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¹³⁾

제3절. 배우자폭력의 발생 원인 및 특징

1. 배우자폭력의 발생 원인

앞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폭력을 행위자가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외에 성적 학대, 위험한 도구사용과 기물파괴 및 부조(扶助)를 요하는 배우자에 대한 유기행위 등을 통해 배우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 배우자폭력의 발생 원인과 특징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배우자폭력의 실태를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알아보기로 하되 연구목적상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위주로 하였다

1)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 생물학적 요인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를 초래하여 공격적 성향과 폭력행동을 증가시켜 배우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2) 심리적 요인

13) 김명환, “가정폭력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7면

남성의 경우에는 의처증, 여성의 경우는 의부증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말해 주듯이 어린시절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평균인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도 배우자 폭력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사회적 요인

(1) 가부장적 사회제도

근래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왜곡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하에서 폭력을 가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 부부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2) 경제문제 등 사회문제 스트레스

실직, 불경기 등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가장일수록 가정폭력을 돌발적인 분노 표출 방법, 또는 단기간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배우자폭력의 특징

1) 먼저 은폐성을 들 수 있다. 집안의 문제이며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여 부부폭력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심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부부폭력은 일단 발생하면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3)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아내의 친정식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4) 부부폭력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손상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5) 부부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되어 폭력적인 가정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제4절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은 학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며 특히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폭력이 매우 복잡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의 연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정신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측면이 부정확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개인적, 인구학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 등 수많은 원인과 요소들이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이런 요인들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 그중에서도 배우자폭력의 발생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문화적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성차별주의 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론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¹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1970년대부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학자들에 의해 그 원인이 이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개인내적 이론(Individual theories), 사회심리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ies), 사회구조적 문화적 이론(Sociostructural cultural theories)의 세

14) 김화주, “아내학대의 유형별 사례연구(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면

범주로 나누어지고 이 범주의 이론들은 몇가지 세부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개인심리적 관점에서 정신병리 이론, 알코올 이론, 생물학적 이론을,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사회학습이론, 좌절-공격이론, 자원 결핍 이론을 살펴보고 기타 체제이론과 페미니즘 이론도 기술할까 한다.

1. 개인심리적 관점

1) 정신병리 이론

가정폭력의 근원적인 요인을 선천적인 정신적 결함 또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질환을 갖는 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선천적인 정신병질은 자폐증이나 각종 정신 이상 증세 또는 콤플렉스를 들 수 있고, 후천적인 병질은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폭력의 경우에는 의처증, 의부증 그리고 편집증 등이 가정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가정폭력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현상으로 파악함으로써 많은 정상적인 남성이 행하는 비정상적인 가정폭력 행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며 모든 폭력남성이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¹⁶⁾

2) 알코올이론

술이 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알코올이 긴장을 해소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순기능이 있는데도 알코올에 의한 가정폭력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피지(E. Pizzey)는 아내를 학대하는 남성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지만 그들에게 술을 마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15) 박인황, 전제논문, 11면

16) 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98, 39면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아내학대에 있어서 음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비판하였다.¹⁷⁾

3) 생물학적 이론

오랜 시간동안 인간의 폭력과 관련된 범죄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온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원인을 행위자의 생물학적 특징에서 찾는 이론이다. 범죄자에 대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롬브로조(C. Lombroso)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폭력과 범죄행위는 행위자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이 되고 이들 행위가 사람의 생태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된다. 생물학적 이론은 학대 행동에 대한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원인에 역점을 둔다. 특히 이 분야의 이론가들은 유전학, 신경 병리학, 뇌염이나 외상에 의한 뇌의 구조나 기능의 변화, 내분비학적 요소들이 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강조한다. 즉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 발작, 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약물중독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난 이 이론은 범죄현상을 일관성있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학문으로서의 이론적 한계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외에는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응방안도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르면 범죄는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도 없고 재사회화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최소한의 행위지침을 제시해야 할 범죄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무용하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 이후 발달된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유전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다만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7) E. Pizzey, *Scream Quietly or The Neighbors Will Hear*, London, If books, 1974., 85면

18) 박인영, “아내학대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면

1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161면

2. 사회심리적 관점

1) 사회학습 이론

개인의 학습 바탕은 원래 백지상태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현상(learned phenomenon)으로 이해한다. 개인은 타인의 폭력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²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인생경험을 통해서 폭력성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폭력행위의 기술을 배워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폭력의 학습과정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범행의 동기, 태도 및 범행의 합리화 등이 포함된다. 일단 폭력을 행사하여 바라던 결과가 이루어지면 행위자에게 있어 폭력은 목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단이 된다. 특히 어린 시절에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일반가정의 아이처럼 사랑과 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한 후에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폭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이 폭력을 학습하는 가장 유력한 장소로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배우는 곳임을 강조하고, 또한 이러한 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 보면서 가족내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규범이 형성된다고 한다²¹⁾ 이는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말하며 환경에 의한 사회심리적 학습으로 가정폭력이 세대간에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좌절 - 공격이론

20) 백영희, “학대받는 아내들의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면

21) 안태선,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면

돌라드(J. Dollard)에 의해 개발되고 밀러(N. Miller)에 의해 수정된 이론으로 여기에서의 좌절은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격은 타인에게 해로운 자극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좌절 - 공격이론은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 좌절되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이 표출되어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이론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직, 빈곤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불평등 및 부당성에 대한 집합적 반응까지를 설명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²²⁾ 좌절 - 공격 이론의 문제점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좌절이 공격적이라기 보다는 자살 등 수동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공격적이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아동, 노인, 여성등의 경우에 좌절감이 공격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구분하기 힘들다

3) 자원결핍이론

구디(W. J. Goode)에 의해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그는 가족내에서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원(경제력,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기술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폭력이나 위협 등 강압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²³⁾ 이 이론에 의하면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폭력이 사용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폭력을 자원의 한 유형으로 본다. 사람은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갖지만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며 가족관계에서도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내 지위가 불일치할 때 가족체계내에서 교환관계의 평형을 위해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²⁴⁾

22) 김병준, 『가정폭력 범죄론』, 법문사, 2004, 24면

23) William J. Goode, "The Eamily in New Jersey", *Journal of Marraiage and The Family*, Vol. 33, 1971., 35면

24) 변화순,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p 33-35

3. 체제이론

이 접근은 부부폭력이 “왜”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갈등상황 속에서 “어떻게”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둔다. 체제이론에 의하면 폭력은 개인적 병리나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체제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직선적인 원인, 결과 분석만으로는 상호 인과관계에 있는 관계의 복잡성을 찾아낼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여기에서는 부부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부폭력이 지속적인 행동유형으로까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체제이론은 결혼관계 속에서는 아내와 남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 역시 체제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간의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가정에 있어서의 가정폭력을 다루는 데에는 유용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4. 페미니즘 이론

기존의 이론이나 관점들과 달리 페미니즘이론에서는 가정폭력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가정폭력을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서 남성에게 의하여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학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페미니즘 이론은 가부장제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폭력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남녀불평등에서 비롯되는 폭력만을 그 범주에 포함시킨다.

페미니즘 이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⁶⁾

25) 신은주,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26) D. K. Gosselin, *Heavy Hands : an Instruction to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1)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는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성차에 따른 사회적인 처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환경이나 권력관계에서 비쳐지는 남녀간의 차이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2) 남성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른 권력은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남성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성학대를 정당화시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재산을 소유하여 왔다. 그러므로 권력과 통제는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을 확립하고 유지시키며 또한 성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합법화시키는 핵심요소이다.

3)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예속을 종식시키는 것이 페미니스트 운동의 주요한 목표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법에 의해서 동등하게 취급되고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녀간의 평등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에 그쳐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체제 전체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권주의자들은 학대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한 아내가 처한 현실은 수입의 격감, 이혼녀로서의 낙인, 탁아서비스의 결여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학대받는 아내들이 폭력남편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비스의 연속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우선적으로 각 개인의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의 변형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가치, 사회, 가족의 가치변화,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 모든 여성의 평등권 취득을 통한 사회의 변형이 우선적인 개입의 초점이 된다. 27)

Prentice-Hall Press, 2000.7, 78면

27) 김인숙 등 공저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285면

제5절. 가정폭력의 현황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배우자폭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부부폭력은 숨겨진 범죄로서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한 접근방법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우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용이치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범죄인인 가해자를 찾아내어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었다. 더욱이 소수인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 최근에 발표된 정부기관의 통계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가정폭력 발생 건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배우자폭력은 은폐성이 그 특징중의 하나로 각종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수치는 실제 발생건수보다는 훨씬 적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1)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내용 현황

표 2 - 1은 2006 - 2008년도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진 상담내역을 제시한 것이다. 2008년도의 경우를 보면 전국 303개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된 총상담건수가 307,851건이었는데 그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130,921건으로 42.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06년의 경우에는 283,705건의 총상담건수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138,949건으로 49.0%를 차지하여 무려 반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2008년의 경우 기타 상담내역이 130,921건으로 57.5%를 차지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이혼이 34,788건으로 11.3%, 부부갈등이 39,361건으로 12.8%, 가족문제가 37,231건으로

12.1%, 성문제와 관련된 성폭력, 성매매, 성상담이 합쳐서 15,496건으로 5.3%, 중독문제가 3,844건으로 1.2%, 기타문제로 상담한 건수가 46,210건으로 15%를 차지하였다.

표 2 - 1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폭력상담	기타상담								
			소계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성폭력	성매매	성상담	중독	기타
2006	283,705	138,949	144,756	29,151	33,847	30,988	3,338	235	5,037	3,496	38,604
	100%	49.0	51.0	10.3	11.9	10.9	1.2	0.1	1.8	1.2	13.6
2007	309,657	135,386	174,271	36,495	41,311	34,071	3,400	666	5,769	5,471	47,088
	100%	43.7	56.3	11.8	13.3	11.0	1.1	0.2	1.9	1.8	15.2
2008	307,851	130,921	176,930	34,788	39,361	37,231	6,295	778	8,423	3,844	46,210
	100%	42.5	57.5	11.3	12.8	12.1	2.1	0.3	2.8	1.2	15.0

출처 : 2009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통계자료 참조

2) 가해자 유형

표 2 - 2는 2006 - 2008년에 행해진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가해자 총인원수는 2006년 111,216명에서 2007년에는 106,000명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2008년에는 1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서 99,899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상담내용 현황에서 가정폭력 상담건이 2006년 138,949건에서 2007년 135,386건으로 감소하고 2008년에는 다시 130,921건으로 감소한 것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가정폭력 사건을 감소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배우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2006년에 96,338명으로 86.6%, 2007년에는 86,326명으로 80.9%, 2008년에는 82,838명으로 82.9%를 기록하였고 과거 배우자까지 합산하면 2006년 89.7%, 2007년 84.6%, 2008년에는 85.8%로 가정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배우자간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자료에 의하면 기타 가정폭력 가해자는 직계존속이 5.8%(5,740명), 직계비속이 1.9%(1,912명), 계부모가 0.9%, 동거하는 친족이 1.6%(1,547명), 기타가 4.0%(4,019명)를 기록하였다.

표 2 - 2

(단위 : 명, %)

연도	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기타
2006	111,216	96,338	3,417	5,435	2,168	833	1,016	2,009
	100%	86.6	3.1	4.9	1.9	0.8	0.9	1.8
2007	106,755	86,326	3,939	7,163	1,713	885	2,308	4,421
	100%	80.9	3.7	6.7	1.6	0.8	2.2	4.1
2008	99,899	82,838	2,901	5,740	1,912	942	1,547	4,019
	100%	82.9	2.9	5.8	1.9	0.9	1.6	4.0

출처 : 2009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통계자료 참조

3) 가정폭력범죄 검거 · 조치 현황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8년에는 2003년 대비 30.1%가 감소하였다. 증가추세에 있던 가정폭력 관련 검거건수가 2003년 16,408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1,461건을 기록하여 약 30%의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 홍보활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8년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을 상담받은 인원 130,921명에 대비하더라도 8.8%인 11,461명 만이 검거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미미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검거사건의 8.2%인 940건 만을 가정보호 사건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로 보아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처리는 아직 가정문제 해결방법으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분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충치	
			구속	불구속	기타 (제도)	건수	인원
'02년	15,151	16,324	586	15,127	611	3,702	4,083
'03년	16,408	17,770	496	16,787	487	4,186	4,459
'04년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05년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06년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03
'07년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08년	11,461	13,143	77	12,748	318	940	1,044

출처 : 2009년 경찰백서 참조

2. 배우자폭력의 유형 및 개별행위

1) 배우자폭력의 유형

2009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폭력의 유형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및 유기, 성학대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배우자폭력의 개별행위로 세분하면 정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 및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 세가지이다. 방임 및 유기에 의한 부부폭력은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

다. 성학대는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 4 배우자폭력의 유형 및 개별행위

배우자폭력의 유형	배우자폭력의 개별행위
정서적 폭력	1.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2.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3.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	4.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
	5.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6.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7.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8.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9. 배우자를 물건(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10.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경제적 폭력	11.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12.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13. 수입 ·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14.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성학대	16.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7.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 배우자폭력의 발생 원인

배우자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사소한 말다툼 · 잘못이 24.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소 부부간에 대화로서 소통하는 것이 부부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의미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성격 차이가 21.5%, 그 다음으로 상호 이해부족이 14.6%를 기록하여 이 들 역시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히 된다면 비율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적인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부갈등을 완화하고 가정폭력 발생 요인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폭력에 있어서 상당

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경제문제와 배우자의 술버릇은 각각 8.8%와 8%를 차지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원인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4.8%), 배우자의 오해와 시가 · 처가문제가 각각 3.1%를 차지하였고 자녀 문제(3.0%), 기타(2.8%), 자격지심(2.7%), 본인의 잘못(1.9%)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이성문제가 1.7% 밖에 차지않은 점은 뜻 밖의 결과로 생각된다. 근래 이혼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²⁸⁾

표 2 - 5 (단위: %, 명)

구 분	(남편의) 아내폭력
특별한 이유 없음	4.8
성격차이	21.5
배우자의 오해	3.1
본인의 잘못	1.9
본인 및 배우자의 이성문제	1.7
경제문제	8.8
자격지심	2.7
상호이해부족	14.6
배우자의 술버릇	8.0
사소한 말다툼 · 잘못	24.1
처가문제	3.1
자녀문제	3.0
기타	2.8
계(수)	100.0(1700)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3) 남편의 성장과정별 아내폭력 발생률

남편의 성장과정에서 아동기 폭력경험이 아내폭력 발생률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에 폭력을 당한 경

28) 2009년 통계청 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10.4%, 2008년 9.7%로 나타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힘과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아내폭력 발생률은 경험없는 경우 32.9%, 둘 다 경험있는 경우 59.7%로 현저한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에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특히 신체적 폭력에서는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동기에 실제로 폭력을 당한 경험을 한 경우보다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한 경우가 아내폭력 발생률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 발생률이 아동기에 폭력당한 경험만 있는 경우는 36.5%이었으나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1%이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폭력을 제외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부폭력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 6

(단위: %, 명)

남편의 성장과정	아내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 대상수
피폭력과 폭력 목격경험 없음	32.9	25.9	18.6	2.6	13.6	10.6	2997
폭력당한 경험만 있음	36.5	30.8	29.4	3.9	18.9	9.6	52
폭력 목격경험만 있음	42.1	35.8	38.4	3.3	22.3	17.2	273
둘 다 있음	59.7	56.5	54.8	12.1	27.4	22.6	124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4) 남편의 사회적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아내폭력 발생률²⁹⁾

남편의 사회적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아내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29)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 졌음', '최근 3년간 실직하였음',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였음',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음', '지난 1년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부관계가 힘들었음', '지난 1년간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지난 1년간 우울증을 앓았음', '지난 1년간 의처증을 앓았음', '지난 1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음' 등 10개 지표를 1(그림), 2(아니오)로 구성됨

가 높을수록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29.1%이었으나, 스트레스 강도가 1 - 2점인 남편은 37.4%, 3 - 4점인 남편은 39.9%이었으며 스트레스 강도가 5점 이상인 남편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56.5%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모든 유형별 폭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 - 7

(단위: %, 명)

남편의 사회적 스트레스	아내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 수
0점(없음)	29.1	22.5	14.7	2.1	12.8	8.5	1,177
1 -2점	37.4	30.3	23.6	3.1	15.3	12.9	1,886
3 -4점	39.9	33.9	33.4	5.4	18.1	12.6	404
5점 이상	56.5	47.8	65.7	13.0	30.4	28.3	46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5) 남편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아내폭력 발생률

남편의 자기통제력의 높낮이에 따른 아내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높음 수준에서는 34.3%, 중간 수준에서는 34.1%, 낮음 수준에서는 45.3%로 나타났다. 낮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았고 중간 이상에서는 유사한 수준에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폭력유형별로는 뚜렷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낮았으나 방임이나 성학대 부분에서는 중간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지닌 남편들이 자기통제력이 높은 남편들 보다 폭력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⁰⁾

30) 자기통제력에 대한 지표로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라도 함’,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임’, ‘스릴있고 신나는 일이라면 위험하더라도 꼭 함’,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함’,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 쉽게 화를 내는 편임’, 등 6개 지표를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보통임 4. 그럼 5. 매우 그럼으로 구성함. 자기통제력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는 6개 지표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이 2점 이하는 자기통제력이 높음, 3점은 중간, 3점 이상은 낮음으로 정의함

표 2 - 8

(단위: %, 명)

남편의 자기통제력	아내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
높음	34.3	24.8	18.1	2.8	15.2	14.6	756
중간	34.1	28.0	22.6	3.1	14.5	10.4	2,420
낮음	45.3	39.5	30.5	4.9	19.7	13.9	328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6) 남편의 음주정도별 아내폭력 발생률

음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내폭력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음주 남편의 폭력 발생률이 25.7%임에 비해 조금마시는 남편이 33.2%, 많이 마시는 남편이 40%의 폭력 발생률을 보여 음주량이 많을수록 아내폭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폭력유형별로도 대체로 비음주 남편보다는 음주 남편의 폭력 발생률의 현저히 높았는데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비음주 남편(10.6%)보다 고음주 남편(29.0%)의 폭력 발생률이 무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2 - 9

(단위: %, 명)

남편의 음주정도	아내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
많이 마심	40.0	31.9	29.0	3.4	17.5	13.7	1,503
조금 마심	33.2	27.3	21.5	3.5	13.6	11.1	434
비음주	25.7	21.2	10.6	3.0	11.3	8.3	471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7) 부부의 교육수준별 아내폭력 발생률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남편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아내의 교육수준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아내폭

력 발생률은 부부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37.6%, 남편만 고등학교 이하(아내는 대학 이상)인 학력을 가진 경우 남편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37.1%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부부가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32.6%이었고, 남편이 대학 이상의 학력이고, 아내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아내폭력 발생률이 31.8%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서적 폭력과 방임의 경우에도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부부 모두 대학이상을 나온 가정의 남편의 폭력 발생률이 14.4%인데 반하여 둘 다 고등학교 이하를 나온 가정의 남편의 폭력 발생률은 27.7%를 기록함으로써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 10

(단위: %, 명)

구분	아내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
부부 모두 대학 이상	32.6	25.8	14.4	2.9	13.6	9.6	1,073
남편만 대학 이상	31.8	24.0	19.6	1.2	12.7	10.6	514
아내만 대학 이상	37.1	29.8	24.9	4.8	16.1	8.9	126
둘 다 고등학교 이하	37.6	31.1	27.7	3.7	16.5	13.2	1,823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8) 부부의 취업여부별 아내폭력 발생률

부부가 모두 비취업인 경우 아내폭력 발생률이 24.9%로 가장 낮았으며 남편은 실업상태이고 아내만 취업한 경우에 남편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52.6%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열등감과 의처증 등이 복합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부부 모두 취업한 경우가 남편만 취업한 경우보다 아내폭력 발생률이 높았는데, 부부 모두 취업한 경우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37.9%이었고, 남편만 취업한 경우의 아내폭력 발생률은 32.9%이었다

표 2 - 11

(단위: %, 명)

구분	아내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대상수
부부 모두 취업	37.9	29.3	22.7	4.1	17.7	13.5	1,483
남편만 취업	32.9	27.5	20.8	2.2	12.6	10.4	1,756
아내만 취업	52.6	43.9	44.9	7.0	24.6	12.3	115
둘다 비취업	24.9	19.3	19.9	1.7	11.0	8.8	184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9) 폭력을 행사한 후의 남편의 태도

폭력을 행사한 후의 남편의 태도는 행동 후 평소보다 더 잘해 준다는 경우 (32.2%)보다는 행동 전후가 동일함(58.9%) 또는 행동 후 평소보다 더 못해 줌 (4.6%)을 합산하여 63.5%가 아내폭력을 행사한 이후 개선된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은 일단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수치로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 - 12

(단위: %, 명)

구 분	아내폭력 후의 남편 태도
행동 전 · 후가 동일함	58.9
행동 후 평소보다 더 잘해 줌	32.2
행동 후 평소보다 더 못해 줌	4.6
행동 후 무조건 피함	4.0
기타	0.3
계(수)	100.0(1,700)

출처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3장 가정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제1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절차

1. 법적 근거 및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로마법에서 형성되어 커먼로(Common law)를 통해 법격언이 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종종 인용된다³¹⁾ 이는 법에 의한 가사불개입(家事不介入)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인의 결과로 구성된 가족이 어떤 형태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³²⁾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가족내부에 관한 일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건강한 국가공동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정범위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사건을 특별히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벌법규, 즉 일반형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사건에 일반 형벌법규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형법에 의한 전통적 의미의 형사처벌은 가정의 유지가 무의미해진 최후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정을 유지한 채로는 남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형사처벌 이전에 신속하게 가정문제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개선 · 교화하여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특례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이 등장함으로써 이제까지는 가정폭력행위

31)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2008), 202면

32) 장영수, 『헌법학』 (2006), 홍문사, 855면

자를 처벌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할 수 밖에 없었지만, 경미한 가정폭력사건이라도 불기소처분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법적 대응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즉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원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다양한 보호처분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³³⁾ 이하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

1) 신고와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4조 1항).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4조 2항).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제6조 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모 등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또는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제6조 2항).

2) 신고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현재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 수사
-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3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법조, 2001.8(Vol. 539). 33면

(4) 폭력행위 재발 시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³⁴⁾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

4) 검사의 수사종결 및 기소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 구약식(벌금)으로 종결시키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일반 범죄처럼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제9조)

5) 법원의 결정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때 가정법원은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 결정을 할 것인가 처분결정을 할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

(가) 불처분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37조)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4)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다음의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예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예의 유치

2.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나) 보호처분 결정 등 (제40조)

가정폭력사범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다음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폭력적 성향을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한다

1. 1호 처분(행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해자의 폭력 재발 위험성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원천적으로 행위자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이다. 이것은 전술한 가정폭력 특례법 제29조에 규정된 임시조치 1호와 2호를 종합하여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처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횟수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은 종전의 처분기간과 합산하여 최장 1년을 넘지 못한다

2. 2호 처분(행위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해자가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치이다.

3. 3호 처분(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원이 가해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4. 4호 처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판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4호 처분은 보호관찰 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5. 5호 처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해자를 사회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 · 감독과 사회재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는 교정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가해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제32조에 의해 법에 정한 각종 준수사항³⁵⁾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6개월 미만, 연장시에는 1회에 한하여 합산하여 1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독립적 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처분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4호 처분인 사회봉사 · 수강명령과 병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6. 6호 처분(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판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6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시설³⁶⁾에 감호위탁을 명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합산 1년 미만의 기간 연장

35)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동법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에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6) 보호시설의 종류(동법 제7조의 2)

이 가능하다. 감호위탁 처분의 성격은 가정폭력 사범중에서 다른 처분에 비해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가해자를 형벌에 대신하여 복지적 · 행정적 성격을 갖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7. 7호 처분(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가정폭력 가해자 중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판사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물론 1회에 한하여 최장 1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함은 앞에서 본 사회봉사 · 수강명령처분을 제외한 다른 보호처분과 마찬가지로, 7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제48조)

8. 8호 처분(상담소등에의 위탁)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혼인 또는 동거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나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유익할 것이라고 설명을 할 경우 양당사자가 수긍을 하는 때에 상담위탁처분이 내려진다. 기간은 최장 6개월이나 1회에 한하여 모두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8호 처분을 받은 행위자도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대납할 수 있다.

6) 항고와 재항고

-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제49조),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51조)

7)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제58조 제2항)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현황 및 실태

1. 총설

우리나라의 배우자폭력 문제는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 설립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쉼터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은 원래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으나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소관부처가 여성부로 바뀌었다³⁷⁾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의 업무로 이관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가정폭력 정책을 여성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01년 이후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 · 법률구조 · 직업훈련 등의

37) 2001년 당시 여성부의 명칭은 2010년 현재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다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³⁸⁾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여성부의 신설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확충이다. 국가개입을 통한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확대된 것이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1998년 17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275개소에 이르며, 피해자 보호시설 또한 2001년 27개소였던 것이 2009년에는 66개소로 증가했다.

그리고 1998년 설치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도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양적 · 질적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가정폭력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흡하나마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요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1998년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 조치를 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는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을 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변호사협회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임시보호조치를 하기도 하며, 그 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소의 장 1명과 상담원 2명으로 구성되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으며(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 우리나라 가정폭력

3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1999년 시작되어 여성부 출범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부 『2008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조

상담소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 1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개소당 평균 상담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자	계	가정폭력	기타	
2006	372	2,311	815	1,496	283,705	138,949	144,756	763
2007	316	2,828	902	1,926	295,825	135,386	160,439	939
2008	303	2,407	820	1,587	307,851	130,921	176,930	1,016
2009	275	1,816	683	1,123	307,009	132,227	174,782	1,129

출처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조치결과는 표 3 -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주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심리 · 정서적 지원이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수사 · 법적 지원이 17.8%로 많았으며, 시설 입소연계가 2.8%, 의료지원이 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0.0%를 차지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심리 · 정서적 지원> 수사 · 법적 지원> 시설 입소 연계> 의료지원의 순서는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다.

표 3 - 2

(단위 : 건, %)

연도	피해자					
	계	심리 · 정서적 지원	수사 · 법적 지원	시설 입소연계	의료지원	기타
2006	167,362	96,692	57,995	4,670	3,084	4,921
	100%	57.8	34.7	2.8	1.8	2.9
2007	167,623	104,279	46,749	3,472	3,486	9,640
	100%	62.2	27.9	2.1	2.1	5.7
2008	158,781	101,624	34,488	3,469	2,844	16,356
	100%	64.0	21.7	2.2	1.8	10.3
2009	140,016	95,667	24,935	3,893	1,563	13,958
	100%	68.3	17.8	2.8	1.1	10.0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참고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가정폭력상담소의 가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표 3 - 3과 같다. 표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개인면담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비중이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 3

(단위 : 건, %)

연도	계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타기관 의뢰	기타
2006	52,943	27,682	19,606	734	4,921
	100%	52.3	37.0	1.4	9.3
2007	51,480	32,051	15,677	1,507	2,245
	100%	62.2	30.5	2.9	4.4
2008	56,891	29,127	22,624	1,002	4,183
	100%	51.2	39.7	1.8	7.3
2009	54,801	30,094	18,404	1,198	5,105
	100%	54.9	33.6	2.2	9.3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명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9년 현재 전국에 66개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 4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연도	개소수	입소정원(명)	상근종사자수(명)		
			계	상담원	비상근 자원봉사
2006	59	955	252	149	103
2007	70	1,115	311	207	104
2008	71	1,128	346	220	126
2009	66	1,094	284	211	73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보호시설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호시설 종사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거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자립자활 교육을 실시하며 취업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시설 종사자는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적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있다.

여성을 기준으로 한 보호시설 입소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표 3 - 5와 같다. 이를 살펴 보면 30대와 40대에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0대 40대가 부부갈등이 고조되어 가정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임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41 - 50세가 35.6%를 차지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31 - 40세가 31.4%로 그 뒤를 이었다. 20세 미만이 1.8%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초혼 연령이 20대를 훨씬 넘은 최근의 추세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다. 그 외 61세 이상이 4.5%, 20 - 30세가 12.3%를 차지하였다

표 3 - 5

(단위 : 명, %)

연도	계	20세 미만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6	2,976	69	398	1,094	987	340	88
	100%	2.3	13.4	36.7	33.2	11.4	3.0
2007	3,296	65	563	1,118	1,064	373	113
	100%	2.0	17.1	33.9	32.3	11.3	3.4
2008	3,146	67	644	1,009	998	328	100
	100%	2.1	20.5	32.1	31.7	10.4	3.2
2009	2,780	49	341	874	990	400	126
	100%	1.8	12.3	31.4	35.6	14.4	4.5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지원실적³⁹⁾ 은 2009년의 경우를 보면 심리 · 정서적 지원이 5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반아동 지원이 19.6%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적 지원이 16.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립지원이 4.1%, 수사 · 법적 지원이 3.6%, 기타가 3.7%를 기록하였다

표 3 - 6

(단위 : 건, %)

연도	계	지원내용					
		심리 · 정서적 지원	수사 ·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 지원	기타(가해자 지원 등)
2006	87,104	53,382	5,317	12,384	2,863	11,925	1,233
	100%	61.3	6.1	14.2	3.3	13.7	1.4
2007	88,002	54,627	3,812	13,137	3,210	11,627	1,559
	100%	62.1	4.3	14.9	3.7	13.2	1.8
2008	75,788	42,182	3,189	11,801	2,677	11,008	4,841
	100%	55.7	4.2	15.6	3.5	14.6	6.4
2009	74,105	39,120	2,660	11,950	3,066	14,538	2,741
	100%	52.8	3.6	16.2	4.1	19.6	3.7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366센터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하여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이다. 가정폭력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 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조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 · 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을 말한다. 1988년 1월에 처음으로 개통되었고 2001년 7월에는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

39)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리 · 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 교육, 인간관계 훈련 등
2. 수사 · 법적 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3.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4. 자립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5. 동반아동지원 : 학교문제지원(전학문제, 지도교사 면담 등), 학습 · 놀이지도, 아동상담 등
6. 기타 : 장애인 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7. 가해자 지원 :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타기관연계 등

체의 지원으로 전국 16개 시 · 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시설현황은 표 3 - 7과 같다

표 3 - 7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연도	운영주체(개소)		종사자수(명)	
	위탁	직영	계	상근직
2006	12	4	588	144
2007	12	4	584	146
2008	12	4	328	155
2009	12	3	146	146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2008년은 자원봉사자 감소로 종사자수 감소, 2009년 상근직만 적용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기타(37.3%)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3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가족문제(6.7%), 부부갈등(6.5%), 성폭력(4.3%), 이혼(3.4%), 성상담(2.9%), 성매매(1.0%), 중독(1.0%) 등의 문제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통계는 이제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가정문제중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표 3 - 8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
2006	164,181	50,838	7,694	14,176	9,871	2,665	9,228	6,749	2,275	6,478	54,197
	100%	31.0	4.7	8.6	6.0	1.6	5.6	4.1	1.4	4.0	33.0
2007	160,899	48,678	8,258	13,492	8,372	2,199	8,427	6,297	1,906	7,507	55,733
	100%	30.3	5.1	8.4	5.2	1.4	5.2	3.9	1.2	4.7	34.6
2008	158,635	47,760	8,991	11,887	7,215	2,148	8,205	6,419	1,817	6,876	57,317
	100%	30.1	5.7	7.5	4.6	1.4	5.2	4.0	1.1	4.3	36.1
2009	190,859	65,074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35	71,045
	100%	34.1	6.7	6.5	3.4	1.0	4.3	2.9	1.0	2.8	37.3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다음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행한 상담조치 결과는 2009년의 경우 관련기관과 연계하여준 비율(41.9%)이 가장 높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상담기관(21.6%), 법률기관(5.0%), 보호시설(4.0%), 수사기관(2.5%), 의료기관(2.1%)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6.7%를 기록하였다. 그 외 직접상담이 3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2차 상담권고가 10%, 현장출동 협조요청이 2.9%, 긴급피난처 피신이 1.2%, 기타가 4.7%로 나타났다.

표 3 - 9

(단위 : 건,%)

연도	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출동 협조요청	긴급피난 처피신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기타
		소계	보호 시설	전문상 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기타					
2006	183,774	87,905	9,895	52,071	3,046	13,388	4,709	4,791	669	3,187	73,623	12,194	6,196
	100%	47.9	5.4	28.3	1.7	7.3	2.6	2.6	0.3	1.7	40.1	6.6	3.4
2007	185,003	98,004	9,971	57,928	4,308	12,945	5,225	7,557	647	2,462	65,424	14,129	4,337
	100%	53.0	5.4	31.3	2.3	7.0	2.9	4.1	0.3	1.3	35.4	7.6	2.3
2008	190,650	92,454	9,222	55,221	4,177	11,509	5,251	7,074	590	2,608	74,070	16,510	4,418
	100%	48.5	4.8	29.0	2.2	6.0	2.8	3.7	0.3	1.4	38.9	8.7	2.3
2009	253,147	105,961	10,171	54,616	5,323	12,605	6,278	16,968	7,313	2,978	99,489	25,222	12,184
	100%	41.9	4.0	21.6	2.1	5.0	2.5	6.7	2.9	1.2	39.3	10.0	4.7

출처 : 200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자료

제4장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제1절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개인적 문제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배우자폭력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에서부터 여러 건강상의 장애들을 일으킨다. 또한 많은 여성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부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의 건강장애에는 골절, 뇌를 다치는 경우, 성병, 의기소침, 정신분열,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와 연관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들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손상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일 수 있겠지만 남편의 폭력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내의 교육수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내의 신체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내의 무기력이 심하고 자아강도도 약하며 자아기능의 손상도 크다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에 학대가정에서 자라나 부모의 학대를 많이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무기력과 자아기능의 손상이 크다고 한다⁴⁰⁾

또한 배우자폭력이 주는 스트레스는 가정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체적 · 정서적 증상들을 일으킨다. 이러한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구타당하는 여성 증후군’ 즉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나타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은 공포의 재경험, 정신적 둔감성, 신경과민 등인데,

40)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994(봄호), 131-136면

폭력이 계속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⁴¹⁾ 이처럼 여성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커다란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게 하고, 시간이 경과하고 폭력이 상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태는 점차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피해여성은 무력감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감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남편 살해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받는 아내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생활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자녀들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학대받는 아내가 우울증이 있을 때 자녀에게서는 적응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는 지적, 정서적으로 슬픔과 불행감을 갖게 되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의 실패, 적응장애 등의 포괄적인 인격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폭력적 가정의 아이는 청년기에 이를 때 까지 자기 집안의 문제를 숨기고 부인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을 비난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한 개인의 어린 시절에 겪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자신에게도 커다란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 등 폭력의 사회화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가정이 폭력의 사회화에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데서 더욱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⁴²⁾

2. 사회적 문제

1)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이고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하

41)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 50례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3집, 1985, 243면

42) 변화순 외,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21면

는 범죄행위임에도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다.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형사사법 관계자까지도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여타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의료기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우울증, 약물복용, 정서적 불안정, 수면장애, 가정문제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병원을 찾지만 전문의들은 여성이 스스로 학대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먼저 가정폭력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아내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그릇된 사회통념

첫째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부부싸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가정폭력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인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일반적인 부부싸움이 아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상황 자체를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거의 강간을 당하는 식으로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해야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구타와 폭언, 인격적인 모멸감 등을 전부 참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오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 가정폭력이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남성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일부 남성은 ‘아내와 북어는 때려야 맛이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성의 인격과 가치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원칙아래 합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내의 문제발생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정내의 폭력은 집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폭력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셋째 보통 가정폭력 행위자를 정신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로 생각하기 쉬우나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자 중에 정신이상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있기는 하나 가정폭력 행위자의 대부분은 정상적이면서 평범한 사회활동을 하는 평균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의 경우를 들면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아내를 폭행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인이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폭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폭행했다는 변명거리로 사용하기 위한 사례가 많다.

넷째 가정폭력은 빈부,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계층에서나 발생함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사이에서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고학력자나 고소득층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편견은 잘못된 것이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과 같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와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소득, 직종, 교육정도에 관계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⁴³⁾.

3. 제도적 문제

1) 법제도적 문제

가정폭력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11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법적인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부폭력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관이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며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동법 제5조에 의하면 폭력현장에 출동한 경

43) 윤상돈, “엽기 살인목사, 부인 토막살해 팔당호에 유기”, 서울신문, 2010. 7. 6

본 기사에 의하면 현직목사가 1985년 둘째 아이를 임신한 부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낙태시술을 한 외에 5년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부인이 성생활까지 기피한다며 부인을 목졸라 죽인 뒤 시체를 토막내 유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성직자에 의해 가정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살인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시설 · 의료시설로의 인도조항은 있어도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로의 동행요구나 격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⁴⁴⁾ 그리고 현행제도 하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요망된다.

여기서 제도적 문제는 아니나 경찰의 가정폭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경찰의 태도는 소극적이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폭력 발생시 폭력현장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로서 경찰의 개입은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가 미흡하게 되면 피해자는 경찰도 법도 믿을 수 없다는 암담한 심정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폭력남편은 경찰을 무시 위하지 않고 더욱 심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있어도 전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되면 자칫하면 이법이 죽은 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부부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긴급입시조치권”의 도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의 취약성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크게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로 대별될 수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인적 · 물적인 차원에서 자원과 예산 부족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가정폭력 상담소는 대도시 및 중 · 소도시 등 도시지역에 80% 정도 있는 반면 농 · 어촌 지역에는 20% 정도 밖에 없어 농 · 어촌 지역 이용자는

44)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정책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125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상담소는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가 개인보다 많은 반면, 농 · 어촌지역은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가 법인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의 경우 법인보다 재정지원이 열악하여 운영상태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 · 어촌에 설치된 상담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운영상 재정과 인력부분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2009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66 운영상 재정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해 종사자중 94.1%가 (매우)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시설의 경우 가장 부족한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였으며 그 외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66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부족과 급여수준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부족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이 지적되었다. 현재 각 보호시설에서는 집단상담, 개별상담, 법률상담, 미술치료요법,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제2절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1. 예방적 대책

1) 사회인식의 전환

근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가정폭력 특례법 등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도 많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경찰에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특히 최일선의 법집행기관인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신고의식의 강화 등 경찰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반응과 개입은 그만큼 다른 현안업무에 밀려 낮은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의 요구와 지지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가정폭력을 경찰업무에서 비중이 높은 업무로 우선순위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경찰에 의존한 가정폭력 억지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과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더불어 각종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5) 김혜선,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개입”, 『입법조사연구』, 제237호, 1996

2)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 강화

가정의 화목은 가정폭력 범죄의 중요한 사회 예방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생활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족간 특히 부부간의 대화부족은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폭력남편들은 부부간에 대화보다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전통적인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교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 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기술 및 감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교육받도록 하면 가정폭력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유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하도록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음주에 대한 사회인식의 제고

우리 사회는 음주자의 행동에 대해 온정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고 법적 처분에 있어서도 술은 형벌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되어 왔다⁴⁶⁾ 그러나 음주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음주문제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가해자들의 음주는 상습화되고 취할 때 까지 마시는 등 바람직하지 않는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음주 후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과음 후 가해행위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6) 우리 형법은 제10조에서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그 형이 감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법원의 판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경향이 있었다

음주가 가정폭력의 발생빈도, 폭력의 만성화 및 심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큰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음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당사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서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감소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인적 대책

1) 외부적 통제

첫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 발생원인 및 가해자의 위험성, 폭력의 유형 등을 포함한 주요 원인들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처벌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개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폭력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맞대응은 가해자의 폭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발생빈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폭력에 대한 대응을 통해 폭력을 불허한다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가정폭력 대처교육은 유효한 가정폭력 대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폭력적 상황을 더 이상 견디려 하지 않고 외부적 수단을 동원하여 가해자의 폭력을 막으려 한다고 스스로 느껴야만 폭력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충동성이 심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경찰신고, 법적 처벌 강화 등 외부적 통제를 통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의 신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의 신고는 발생빈도, 폭력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폭력의 피해를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 초기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은 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의식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신고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일반인 대상으로 가정폭력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강제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하는 대처만으로도 폭력행동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며, 앞서 보았듯이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2) 심리 및 정신과적 치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폭력 성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가해자 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나 입원을 통한 격리조치로 폭력성향을 제한하는 것이 요망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학대받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인 외상 뿐 아니라 낮아진 자존감, 불안감,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특징을 갖는데 이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도와 피해자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을 해결하여 자존감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치료에 참여하는 가족치료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기만으로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외부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폭력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력가정 자녀에 대한 치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또 다른 특성중의 하나는 맞고 자란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공격성향이 높아 성인이 된 후에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는 가정폭력 예방수단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적 대책

1)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의 내실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먼저 가정폭력 상담소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은 32.4%에 불과하여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상담소는 정부지원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이 낮은 것은 상담소 설치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담소의 양적인 증가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 동 지원비율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상담소가 가장 높았고 농 · 어촌에 위치한 상담소가 가장 낮았는데 무려 85.7%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담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운영주체별로도 법인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았는데 79.6%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질높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짐작된다. 이는 지역 및 운영주체별로 상담소간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확보되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상담소간의 서비스 질의 편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농 · 어촌에 위치한 상담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상담소의 균형적 배치를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상담소는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나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상담소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보수분포도를 살펴보면 200만원을 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200만원 이하가 22.2%, 150만원 이하 30.1%이었으며 심지어 100만원 이하도 47.7%나 되었는데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부분이 주간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200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종사자들은 재정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외 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시설 공간 및 환경 등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주목되는 점은 과잉 행정지도 및 규제를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이는 종사자들이 지원은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서 감독만 철저히 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근래 외국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온 후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40% 이상의 기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원체계가 요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확충 및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 및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시설,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다.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더욱 곤란한 상황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의료 부분에서 무료치료 확대, 정밀 건강검진, 치료의 지속적 보장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기존의 피해자 보호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취업, 주거, 의료, 심리정서적인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제도적 절차 및 입법적 개선방안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준의 마련

우선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사건을 형법을 통해 일반 형사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해 보호사건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이원적 제재구조를 취하고 있다.⁴⁷⁾ 이원적 제재구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의 원상회복’에 치우친 나머지 형사처벌을 꺼리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9조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으로 행위자의 성행, 사건의 성질 · 동기 및 결과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의사 존중을 이혼여부로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47) 보호사건은 법원에서 벌금의 이상의 형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는 형사범에 비해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을 발급할 때 처벌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과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구금을 전제로 한 처벌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내처우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구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데 그 중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상당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미 공격적 폭력 성향이 체질화되어 있으므로 처벌적 요소가 강한 형사사건 이전에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해 개선의 기회를 준 이후 효과가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해야 한다

셋째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죄를 재발한 경우, 치명적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공범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형사기소가 바람직할 것이다⁴⁸⁾

2)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보완조치 요망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우선 가정폭력 초기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권’의 도입이 요망된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Risk Assessment)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장래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⁴⁹⁾.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효

48) 한인섭, 전제서, 1999, 129면

49)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 연구』 제19권 제3호

과적인 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없이 적절한 분류처우를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각국은 CTS(Conflict Tactic Scale) 등 다양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조은경이 실무자들을 위해 아내구타자의 위험평가 및 유형분류 조사표를 제안한 바 있고, 2007년에는 이수정이 한국판 아내학대위험성 평가도구인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⁵⁰⁾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결과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한계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검사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법원단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그 외 가정폭력사건이 단순히 법률적 지식이나 논리를 가지고 시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심리와 사회복지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전문재판부의 설립이 요망된다. 또한 폭력 재발 위험가정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법률 집행기관간의 공조하에 공적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감시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2008 가을), 166면

50)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 아내 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 국내실정에 맞는 가정폭력 재범 위험요인 목록을 얻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상담원이 참가하여 개발한 위험성 평가도구

제 5 장 결 론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우리 가정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가정의 문제였으며 국가와 법의 개입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 이전의 우리 사회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가정구조하에서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로서 남성의 폭력성향이 용인되는 가운데 가정내 여성의 인권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관련 법제정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과 특히 IMF 사태를 거치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보다 힘을 얻게 된 여성들이 가정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부당한 대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2001년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가정폭력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만 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도 폭넓게 자리잡게 되었고 실제 법과 경찰력이 개입하면서 가정폭력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앞에서 살펴본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선 통계수치에서 보았듯이 가정폭력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제 이를 요약하여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가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볼까 한다.

우선 미시적 접근 방안으로는 가정폭력 발생시 가족단위의 개입을 통한

정확한 사정과 더불어 가정폭력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대상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부부치료, 부부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 거시적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가운데 가정폭력의 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가정폭력 관련법의 정비와 시행이 요망된다. 셋째 법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실행이 요망되며, 법원도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하에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가정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밝은 사회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공미혜, 『한국의 가부장적 테러리즘』, 도서출판 하우, 1999
- 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98
- _____,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1990
- 김병준, 『가정폭력 범죄론』, 법문사, 2004
- 김인숙외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 김승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 2000
- 김운희,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8
-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35호, 1998
- 박성식 외 4인,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9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유영주 외 『새로운 가족학』, 도서출판 신정, 2004
- 이소희 외 3인,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도서출판 대왕사, 2004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 차준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탐구당, 1996
- 최영인/염건령, 『가정폭력범죄와 여성에 의한 스토킹 범죄이론』, 백산
출판사 2005
- 하태훈, 『판례중심 형법 각론』, 2006, 법원사, 356면

2) 학위논문

- 김명환, “가정폭력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 학대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5.
- 김수율,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화주, “아내학대의 유형별 사례연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현우,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미영,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인영, “아내학대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인황, “가정폭력범죄의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백영희, “학대받는 아내들의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손윤정,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손여옥,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에 대한 형법정책적 대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9.
- 신경수,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신은주,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안태선,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황인호, “아내폭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3) 기타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 50례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3집, 1985.

김혜선,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개입”, 『입법조사 연구』 제237호,
1996.

박미은, 『대한의료사회사업가 협회 워크샵 보고서』,
대한의료사업가협회, 1996.

변화순,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이동명, “가정폭력의 본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1권, 2006.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법조』, 2001.8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4) 인터넷사이트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서울신문 홈페이지 www.seoul.co.kr

2. 국외문헌

Gossenlin, D. K., *Heavy Hands : an Instruction to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Prentice-Hall Press, 2000.7

Pizzey, E., *Scream Quietly or The Neighbors Will Hear*, London, If books, 1974.

Dollard, John. / Miller, Neal.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39.

Goode, William J., "The Eamily in New Jersey", *Journal of Marraiage and The Family*, Vol. 33, 1971.



ABSTRACT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 Current Situation, Major Problems and Preventive Measures

Kim Young Ma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We tend to view the family as a social institution in which love and harmony abound. However, the opposite is often true, with violence pervasive in Korean families. Korean tradition tended to see the family or domestic violence as private family matters refusing outside intervention by legal authorities as well as social organizations. Thus, human rights of a woman in the family have often been neglected.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Special Law on Family Violence and the Prevention Law of Family Violence in 1997. Als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has been in charge of mak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on the family violence. Under the policies, a variety of institutions, programs and services have come into being, namely,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shelters for battered women, 'woman hotline 1366', and so on. Also,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on domestic violence have been available not only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but also through various inter media.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domestic violence in Korea in terms of its theoretical background, incidences , gaps between problematic situations and services, and to suggest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Based on the limited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both microscopic and macroscopic measures. In regard to the microscopic programs, some family casework services are needed, which include counseling, assistance in finding a job and legal help. Services to battered women may include 'safety planning', which is an empowerment approach to help women develop resources to maintain their safety. Second, financial and manpower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by government to counseling centers, shelters and other social service agencies. Third, social programs for the husbands should also be established, which may include group therapy for batterers, marriage counseling for both spouses, etc.

Macroscopic measures can be included: to establish systematic social network among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organizations; stronger enforcement of the family violence laws and regulations; more efficient operation of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